

심 사 보 고

1997. 6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6월 12일, 충청북도지사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'97. 6. 18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회관장 최정자)

가. 제안 이유

- 도 여성회관 청사이전후 시군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도 전체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
- 지방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사용료 대여사업 및 위탁교육비 신설
-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한 건전사회 생활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

나. 주요 골자

- 설치 (안 제1조)
 - 영세여성 자립기반 조성 → 지역여성 능력개발과 다기능적인 여성 공동의 장 활용
- 위치 (안 제2조)
 -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2가 116-146 →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-17

○ 업무 (안 제3조)

1. 여성 기술인력 양성 →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
2. 여성 교양강좌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→ 여성 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
3. 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→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
4.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→ 여성정보자료실 운영
5.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→ 여성기술인력 양성
6. 각종 시설물 대여사업
7.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

○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(안 제6조)

- 예식장 사용료

- 평일 9,000원, 공휴일 10,000원 → 대강당 50,000원, 강의실 20,000원, 예절실 30,000원

- 수강료

- 기술교육 3,000원 → 10,000원
- 기타교육 5,000원 (변경없음)
- 전문교육 (신설) 1인 1주(4시간) 20,000원
1인 2주(8 ") 3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도여성회관 신축이전에 따라 도 전체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와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여성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조례를 대폭 개정하려는 것으로
- 현행 조례 제7조 (사용료 면제) 4호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7조 2항 2호에 구체적 공적 목적으로 명기한 것은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
- 그러나, 시군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와 제4조 관장의 직급에 관한 내용이 빠진 이유, 제8조 (위탁관리) 조항에 "일부 또는 전부"를 "일부"물로 바꾸게 된 사유, 냉·난방비 신설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여성회관 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

<참고자료>

- 신구조문대비표